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호,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I.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 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정보
-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투자자문대상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교류차단 부서에서 확인한 정보. 다만,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담당부서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 제외함
 3. 기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 3)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상기 정보교류차단 설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및 선행매매 금지 의무 준수를 전제로 감사, 인사, 회계,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보교류를 상시 허용함
- 4) 계열회사 등 제 3자와의 정보교류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금융투자업 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 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II.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1. 고객투자자산부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투자자문대상 및 그 운용에 관한 정보)
2. 고유투자자산부문 (고유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3. 계열회사 등 제 3자와의 정보 교류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 따른 사항 제외)

2) 총괄책임자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1.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대표이사 및 감사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3. 정보교류차단 업무조직: 컴플라이언스팀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의 목록으로 지정함

1.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
2. 법률, 계약, 내부규정 상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을 지정하고 거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이해상충 대응방안을 마련함

1. 업무상 취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려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도주문 체결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선행매매 하는 행위
3. 회사가 보유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증권을 회사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정보를 회사 또는 임직원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5. 집합투자재산으로 펀드 판매, 조사보고서 대가,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2) 이해상충방지의 원칙

1. 고객의 이익은 회사, 주주,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 이해상충 거래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1.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통제 임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보호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함
2.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거래유형별로 거래중지,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V. 기타 이해상충의 관리

1.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사는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및 이해상충방지 등의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이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임직원이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등과 협의하여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거래하여야 하며,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